

# 「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에 관한 연구」 연구과제



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

2025. 12.

공탁금관리위원회



## 목 차

I. 일반사항 .....	1
II. 제안요청 내용 .....	4



I

## 일반사항

### 1. 용역 개요

#### 가. 용역명

- 『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에 관한 연구』 연구 용역

#### 나. 연구의 필요성

- 매년 편의적으로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의 규모가 약 1,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국회 등 각계의 지적이 있음
-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우리 처는 ‘2022 공탁금 찾아주기 TF’ 활동 및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안내문 발송, 홍보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, 효과적인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의 필요성이 있음

### 2. 계약방식: 협상에 의한 계약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국가계약법 시행령”이라 함)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

### 3.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

#### 가. 용역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간

- 다만,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#### 나. 예정가격

- 금 육천 육백 칠십만 원정(66,700,000원)



- 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
- 계약금액은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및 협상 후 결정하되,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

#### 4. 입찰참가자격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(※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)
-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(다만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)
-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,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(G2B)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
  - 학술·연구용역(업종코드 : 1169) 또는 기타자유업종(업종코드 : 9999)
-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



## 5. 입찰보증금

- 입찰보증금 :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
- 국고귀속 등 :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

## 6. 추진 일정

- 입찰 공고일 : 2025. 12. 16.
- 제안서 접수 : 2026. 1. 26. ~ 2026. 1. 27.
  - 접수시간 : 09:00 ~ 17:00 (대체)공휴일 및 주말(토·일) 제외
  - 제안서와 입찰서(가격 제안서)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
- 제출장소 :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심의담당실
- 제출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)
-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: 2026. 2. 5. 16:00/ 대법원 회의실
- 개찰일시 및 장소 : 2026. 2. 5. 17:00/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심의담당실
  -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
- 협상대상자 확정 : 추후 지정
- 협상 및 계약체결 : 추후 지정

※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## II 제안요청 내용

### 1. 용역명

- ▣ 『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에 관한 연구』

### 2. 연구(과업) 내용

#### 1)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방법

- ▣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사업의 수행은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안내문의 발송과 사업 홍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
  -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안내문은 공탁금 지급권리자에게 공탁사실 및 공탁금 지급청구절차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함
    - 우편발송 또는 전자적 안내(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)
  - 사업 홍보는 일반 국민에게 공탁제도 전반에 관한 관심유발 및 공탁금 지급권리자에 대해 공탁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의 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짐
    - 온라인(유튜브, 블로그) 및 오프라인(포스터, 지하철 동영상 광고, 신문 광고 등)
- ▣ [제안사항 ①]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안내와 관련하여, 현재 안내 방법에 따른 장·단점, 효과(출급 효과, 비용 등), 개선방안의 분석 및 추가적인 방법
- ▣ [제안사항 ②] 홍보와 관련하여, 현재 시행중인 방법의 효과, 개선 방안 분석 및 추가적인 방법
- ▣ [제안사항 ③] 기존의 사업수행 방법 이외의 추가적인 방법

#### 2) 소액 공탁금 출급절차 개선 방안



■ 공탁금 출급시, 공탁종류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첨부서면의 종류가 다양하고, 첨부서면의 구비를 위하여 거쳐야하는 추가 절차도 다양함

● 공탁신청의 원인과 연관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승낙(합의) 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고, 이때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대비 출급 가능한 공탁금이 적다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

■ 2025년 귀속사건 건수 중 귀속원금 10만 원 이하인 사건은 22.5%, 50만 원 이하인 사건은 20.7%, 이자만 귀속되는 사건은 12.5%로서, 총 55.7%에 달함

- 귀속사건 금액 중 귀속원금 10만 원 이하인 사건은 0.3%, 50만 원 이하인 사건은 2.1%, 이자만 귀속되는 사건은 0.6%로서, 총 3.0% 3,315,397,301원 임

- 변제 > 개인회생 > 경매집행 > 일반집행사건

■ [제안사항] 소액 공탁금 출급 절차의 개선 방안

### 3)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안내 시스템 개선 방안

■ 현재 우편과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청구안내를 병행하고 있고,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안내는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

■ 현재의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는 전자서명이 부재하여 우편안내문 수령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

- 우편안내문이 송달된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규정<sup>1)</sup>함

■ [제안사항]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문서에 의한 안내 방법, 효과,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및 개발 기간 등의 검토

### 4) 형사공탁을 국고귀속감소사업 안내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

1) 「소멸시효 완성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제6조의2제2항



- 형사공탁의 경우 현재 국고귀속감소사업의 안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- 2022. 12. 9. 형사공탁 시행 이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공탁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누적된 형사공탁 관련 공탁금의 처리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함
- 형사공탁의 특성
  - 형사공탁의 도입취지 :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및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
  - 피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이므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
  - 형사공탁에서 피공탁자(피해자)는 공탁사실에 대하여 검찰, 법원을 통하여 대부분 알고 있으며,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양형 반영을 원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고 있음
- [제안사항 ①] 국고귀속감소사업 안내 대상에 형사공탁 사건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
  - 국고귀속 방지를 위하여 국고귀속 안내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형사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일 수 있고, 피해자보호에 민감한 형사사건 관련이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국고귀속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
  - 그럼에도 국고귀속 감소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안내를 하여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
- [제안사항 ②] 피고인의 회수가 제한되는 공탁금이 누구도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
  - 형사공탁의 경우 일정한 경우(착오, 동의, 무죄판결 확정 등) 외에는 일반적으로 회수가 제한적임



-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공탁을 하고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가 회수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탁금은 15년 이후 국고에 귀속됨
- 이 경우 그 공탁금이 그대로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

### 3.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결과물 제출

#### 가.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

- ▣ 착수보고 : 사업수행계획서(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)
- ▣ 중간보고 : 착수 후 3개월 이내
- ▣ 최종보고 : 용역 기한 이내

#### 나.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제출 : 용역 기한 이내

- ▣ 최종 결과물 제출 내역
  - 최종보고서 : A4 규격의 책자형 20부, 동 내용이 담긴 CD 2장 요약본 10부, 동 내용이 담긴 CD 1장
  - 최종보고서 제출 전 별도로 10부의 가제본 제출 필요